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466

제출년월일 : 1999.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현행 수입증지 조례에서 판매인의 지정 및 자격요건등을 정함에 있어 판매인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삭제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판매인의 결격요인” 을 정한 규정은 “판매인의 지정” 조건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삭제(안제9조)
- 수입증지의 “판매인의 승계” 에 관하여는 제10조 “판매인의 지정 신청” 으로 가능함으로 삭제(안제15조)
-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회원간의 이익금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안제22조 제2항)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를 삭제한다.

○ 제10조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 제15조를 삭제한다.

○ 제22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 별지제1호 서식중 3호의 첨부서류란에서 신원증명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판매인의 결격요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삭 제〉
제10조(판매인의 지정신청) ①(생략) ②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직장금고이사장, 직원공제회장등 직원복지회회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중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④(생략)	제10조(판매인의 지정신청) ①(현행과 같음) 〈삭 제〉
제15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현행③~④항과 같음) 〈삭 제〉

제22조(판매수익금의 관리)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간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상조급 지급
방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판메인지정신청서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이 과주시의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오니 판매인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입증지 판매소 예정위치
(에서 미터)
2. 직 업 :
3. 첨부서류 : 인감계, 신원증명서 및 위치도

년 일 일

신청인 성명 : (인)

파 주 시 장 귀 하

제22조(판매수익금의 관리)

①(현행과 같음)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수입중지판매인지정신청서

주소:

성명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이 파주시의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오니 판매인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입증지 판매소 예정위치
(에서 미터)
2. 직 업 :
3. 첨부서류 : 인감계, 신원증명서 및 위치도
- 〈속 제〉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파 주 시 장 귀 하